

2026년 비상조치 매뉴얼

1 목적

본 매뉴얼은 폐기물 수집·운반, 보관, 선별, 파쇄, 재활용 및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·폭발, 차량사고, 중장비 사고, 추락, 협착, 감전, 화학물질 누출 및 자연재해 등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 비상조직 및 임무

A. 총괄책임자 (대표이사, 사업장장)

비상대응 총괄 지휘
비상조치 의사결정
관계기관 보고 및 협조
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승인
언론 및 대외 대응

B. 초기대응팀 (안전보건담당자, 현장관리자)

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동
사고 유형 및 피해 규모 확인
화재 초기진압
전기·가스·설비 차단
위험지역 통제

C. 대피유도팀 (관리감독자, 팀장)

비상상황 전파
근로자 및 방문자 대피 유도
집결지 인원 확인
미대피자 확인 및 보고

D. 응급구호팀 (응급처치 교육 이수자)

부상자 구조
응급처치 실시
119 신고 및 인계
응급구호 장비 관리

E. 복구지원팀 (관리부서)

관계기관 연락
사고기록 작성
복구 지원
사업장 정상화 지원

A. 화재·폭발 사고 발생 시

1. 최초 발견자는 즉시 "화재 발생"을 외치고 119 신고
2. 비상벨 작동 및 현장 전파
3. 초기대응팀은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 실시
4. 전기 및 연료 공급 차단
5. 대피유도팀은 지정된 집결지로 대피 유도
6.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정보 제공
7. 화재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

B. 차량 및 중장비 사고 발생 시

1. 사고 즉시 작업 중지
 2. 추가 충돌 방지를 위한 통제구역 설정
 3. 부상자 구조 및 응급처치
 4. 119 및 관계기관 신고
 5. 사고 현장 보존
 6.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
- 대상 장비: 암롤트럭, 덤프트럭, 굴착기, 로더, 지게차, 크레인

C. 협착·끼임 사고 발생 시

1. 설비 비상정지
 2. Lock-Out / Tag-Out 실시
 3. 응급구조 및 119 신고
 4. 무단 재가동 금지
 5. 사고원인 조사
- 대상설비: 파쇄기, 압축기, 컨베이어, 선별기, 절단기

D. 추락 사고 발생 시

1. 작업 즉시 중지
2. 추가 추락 위험 통제
3. 응급처치 및 119 신고
4. 작업구역 출입통제
5. 작업방법 재검토

E. 감전 사고 발생 시

1. 전원 차단
2. 절연체를 이용하여 구조
3. 심폐소생술 실시
4. 119 신고
5. 전기설비 점검 후 재가동

F. 유해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

1. 누출구역 즉시 통제
2. 보호구 착용
3. 흡착포 및 방제장비 활용

4. 유출확산 방지
5. 관계기관 신고
6. 폐기물 적정 처리

G. 자연재해 발생 시

1. 태풍·호우
 - 폐기물 적재물 고정
 - 배수로 점검
 - 침수 위험구역 통제
 - 작업 중지
2. 강설
 - 제설 실시
 - 미끄럼 방지조치
3. 지진
 - 안전지대로 대피
 - 설비 정지
 - 시설물 점검 후 재가동

4 비상대응 자원 및 시설

1. 내부 비상연락망
2. 외부 비상연락망
 - 소방서 : 119
 - 경찰서 : 112
3. 소방시설
 - 소화기,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장치
4. 안전장비
 - 안전모, 안전화, 방진마스크, 방독마스크, 안전대, 보호안경, 절연장갑, 응급구호함, 들것
5. 대피장소
 - 제1 집결지 : [제1 집결지]
 - 제2 집결지 : [제2 집결지]

5 교육 및 훈련

1. 비상조치 교육 : 연 1회 이상
2. 화재대피훈련 : 연 1회 이상
3. 비상대응훈련 : 연 1회 이상
4. 응급처치 교육 : 연 1회 이상
5. 훈련결과 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

6 매뉴얼 관리

1. 본 매뉴얼은 연 1회 이상 검토한다.
2. 사업장 변경, 설비 변경, 법규 개정 시 즉시 개정한다.
3.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사무실 및 휴게실에 비치한다.
4. 전자문서 형태로도 관리한다.

7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

1. 사망사고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
2. 사업장장 → 대표이사 →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순으로 즉시 보고
3. 고용노동부, 경찰, 소방 등 관계기관 신고
4. 사고현장 보존
5. CCTV 및 작업기록 확보
6. 재발방지대책 수립 전까지 유사작업 재개 금지

8 작업중지권 운영

1.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.
2.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 제거 전까지 작업 재개를 금지한다.
3.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은 부여하지 않는다.

9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

대상 : 침출수 저장조, 집수정, 맨홀, 폐수처리시설, 지하 저장공간

조치절차

1. 작업자 즉시 대피
2. 무리한 구조 금지
3. 송기 및 환기 실시
4. 산소농도 측정
5. 구조대 도착 전까지 출입금지
6. 구조 시 공기호흡기 착용

10 폐기물 화재 특별대응

대상 : 폐합성수지, 페타이어, 폐목재, 폐배터리, 페리튬전지

조치절차

1. 화재구역 격리
2. 인접 적치물 이격
3. 중장비 활용 연소확산 차단

4. 소방서 도착 전 초기 살수
5. 재발화 여부 24시간 이상 감시

11 환경오염 사고 대응

대상 : 침출수 유출, 폐유 유출, 화학물질 누출

조치절차

1. 유출원 차단
2. 방제둑 설치
3. 흡착포 투입
4. 우수관 유입 차단
5. 관할 환경부서 신고
6. 오염토양 및 오염수 처리

12 비상대응 훈련 운영

1. 화재대피훈련 : 연 1회 이상
2. 중장비 사고훈련 : 연 1회 이상
3. 질식사고 구조훈련 : 연 1회 이상
4. 유해물질 유출훈련 : 연 1회 이상
5. 비상연락망 훈련 : 반기 1회 이상

13 비상조치 매뉴얼 점검

점검주기 : 연 1회 이상

점검항목

- 비상연락망 최신화
- 비상대응 조직 적정성
- 대피동선 적정성
- 소방시설 상태
- 응급장비 상태
- 훈련결과 반영 여부

점검결과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다.